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의 외신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고, 한시조직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두는 정원 중 1명을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5급 1명)으로 충원하는 대신 경찰청 소속 공무원(경감 1명)으로 충원하도록 변경하며, 도서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과 직무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자료관리부 및 디지털자료운영부”를 “지식정보관리부 및 지식정보운영부”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①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도서관자료의 납본과 구입·구독·수집·분류 및 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발간 및 보급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5.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의 운영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7.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운영
8. 서고자료의 관리

9. 고문헌 및 근대자료의 수집·등록·보존·이용·해제(解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제46조의2의 제목 “(디지털자료운영부)”를 “(지식정보운영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을 각각 “지식정보운영부장”으로 한다.

제46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기술 기반 도서관 데이터 활용 서비스 연구·기획

10.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보급

11.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공간의 운영

제69조의2 중 “연구”를 “연구·홍보·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제작”으로 한다.

제73조의2제4항 전단 중 “국무조정실,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방부”를 “국방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845”를 “1,8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19”를 “1,52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66”을 “1,467”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기획연수부· <u>자료관리부</u> 및 <u>디지털자료운영부</u> 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하부조직) ----- ----- <u>지식정보관리부</u> 및 <u>지식정보운영부</u> ----- ----- ----- ----- ----- ----- ----- ----- ----- -----.
제45조(기획연수부) ① (생략)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u>12.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u> <u>13.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u>	제45조(기획연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1.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제46조(자료관리부) ① <u>자료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u>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① <u>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u>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료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한정한다)의 납본과 구입·구독·수집·분류·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발간 및 보급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5. 국제표준자료번호 및 출판예정도서목록 제도의 운영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7. 삭 제
8.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보급
9.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운영
10. 삭 제
11. 자료실·학위논문실 및 간행물실의 운영
12. 삭 제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도서관자료의 납본과 구입·구독·수집·분류 및 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발간 및 보급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5.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의 운영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7.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운영
8. 서고자료의 관리
9. 고문헌 및 근대자료의 수집·등록·보존·이용·해제(解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13. 서고자료의 관리

14. 고문헌의 수집·등록·보존
·이용·해제(解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46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온라인자료(국제표준자료번
호 부여 대상이 되는 자료는
제외한다)의 수집·정리·보
존·활용 및 통계관리 업무

3. ~ 5. (생 략)

6.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 9. (생 략)

<신 설>

<신 설>

10. (생 략)

제69조의2(직무)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

제46조의2(지식정보운영부) ① 지
식정보운영부장-----

-----.

② 지식정보운영부장-----
-----.

1. (현행과 같음)

2. 신기술 기반 도서관 데이터
활용 서비스 연구·기획

3.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 9. (현행과 같음)

10.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보급

11.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공간
의 운영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69조의2(직무) -----

류·교육·<u>연구</u> 등을 통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73조의2(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 ③ (생략)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u>국무조정실</u>, 1명(5급 1명)은 <u>행정안전부</u>, 1명(6급 1명)은 <u>국방부</u>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⑥ (생략)	-----<u>연구·홍보·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제작</u>-----. 제73조의2(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행정안전부----- ----- <u>국방부</u>, 1명(경감 1명)은 <u>경찰청</u> -----. ----- ----- -----. ⑤·⑥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845</u>	<u>1,846</u>	+1
•	•	•	
•	•	•	
일반직 계	<u>1,519</u>	<u>1,520</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466</u>	<u>1,467</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2